Ⅲ 내부통제 관련 규제 비교 분석

1. 법령별 내부통제 관련 규제 차이점 개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규제법률이다.

그 밖에도 앞서 Ⅱ장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서 보험회사 내지 보험대리점에 적용되는 내부통제 관련 규제를 담고 있는데, 법령별로 아래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ⅰ) 내부통제 관련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인 수범자, (ⅱ) 내부통제 규제가 미치는 업무영역(규율사항) 및 (ⅲ) 인적 범위(규율범위)가 상이하며, (ⅳ) 내부통제기준 및 운영조직에 관해서도 구체적 규제 내용에 차이가 있다.

〈표 Ⅲ-1〉 법령별 내부통제 관련 규제 비교

구분	수범자	규율사항	규율범위	내부통제기준/운영조직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회사[1]	자산운용 (위험관리)을 포함한 경영 전반	임직원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 내부통제위원회/위험관리 위원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내부통제 전담조직/위험관리 전담조직
보험업법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경영 전반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 지원조직
금융소비자 보호법	직접판매업자 (금융회사) 판매대리·중개업자 (보험대리점 등) 판매자문업자	금융상품 판매 내지 자문행위	임직원 판매대리·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 보호기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표 Ⅲ-1〉 계속

구분	수범자	규율사항	규율범위	내부통제기준/운영조직
특정금융정보법	금융회사 체신관서 카지노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 기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보고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제공, 파기 등 처리	개인정보취급자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용정보법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금융회사 포함)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 삭제 등 처리	임직원 전속모집인 등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 (전자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금융거래 기반 정보기술부문 보안	임직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인력

주: 1) 이 표에서 말하는 '금융회사'의 구체적 범위는 보험회사를 제외하면 법령별로 모두 다르나 정리의 편의상 별도 기재하지 않음

가. 수범자

법령별 소관사항에 따라 내부통제의무의 주체가 다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기존에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제하던 금융회사들을 수범자로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대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속하는 회사들이며, 보험대리점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수범자가 아니다.

보험업법은 주된 수범자인 보험회사에 관한 내부통제의무 관련 규제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이관되면서 현재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수범자로 하여 내부통제의무를 규정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 및 자문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건전

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직접판매업자) 외에도 판매대리·중개업자 및 판매자문업자 역시 내부통제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을 모두 수범자로 한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내부통제의무는 그러한 금융거래등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행법상 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특수은행 및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상호저축은행 등을 비롯해,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체신관서뿐 아니라 카지노사업자와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의무주체가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본법으로 수범자의 범위가 가장 넓다.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업종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모두 수범자가 된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비롯해 업무 특성상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이 전제되는 금융회사들이 의무 주체가 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의무 주체가 된다.

나. 규율사항

법령별 규제목적에 따라 내부통제의무가 미치는 업무영역이 다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를 포함하여 경영 전반에 대해 내부통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규제에 대해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부통제 관련 규제들은 기본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판매 내지 자문행위에 관해, 특정금융정보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은 각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해,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무 등에 관

해 각 내부통제 시 특별히 준수하여야 하는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규율범위

법령별로 내부통제의무가 미치는 인적 범위 역시 상이한데, 내부통제란 의무 주체 내부의 관리 및 견제를 뜻하므로 원칙적으로 통제의무는 임직원을 향하지만 내부통제 사항에 따라서는 의무 주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외부인을 포함하기도 한다.

예컨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외에도 판매행위를 위탁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취급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전속 모집인등을 포함한다.

라. 내부통제기준 및 운영조직

이상과 같이 법령별로 수범자, 규율사항, 규율범위의 차이는 내부통제의무의 구체적 규제 내용상의 차이로도 이어진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의무는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으로 인해 엄격한 규제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들의 경영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준 마련의무는 물론 심의·의결기관, 책임자, 전담조직 등 운영조직에 관해서 정교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에 비해 특정 업무영역에 관해 규정하거나,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부담 능력이 부족한 다른 수범자들을 예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들은 규제의 내용이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임을 알 수 있다.

내부통제기준 및 운영조직에 대한 상세한 비교 분석은 이하에서 항목별로 살피기로 한다.

2.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필수포함사항)

가. 개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 보험업법(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특정금융정보법(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은 넓은 의미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포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정보법은 준법감시인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준법감시인 선임 근거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겸하는 경우 이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법령별로 규율사항이 다르므로 넓은 의미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될 사항 역시 대개의 경우는 중복되지 않지만, 규율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필수포함사항 역시 중첩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경영 전반을 규율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은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내부통제기준과,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과 일부 내용이 중복된다.

또한 보험업법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적용되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지침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험대리점에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 또한 상당 부분에서 내용이 중복된다.

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기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의 필수포함사항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기준의 필수포함사항은 상당 부분에서 중첩되지만 후자에는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새로 규정하거나 보다 상세한 규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두 기준의 필수포함사항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Ⅲ-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기준 필수포함사항 비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9조 제1항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규정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감독규정 별표 2.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감독규정 별표 2.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가.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 다.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라.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마.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바.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금융상품등에 관한 업무 위탁 및 관련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감독규정 별표 2. 3. 3.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1] 및 직원의 임명·자격요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 라. 대표이사, 이사 등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의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마.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관한 금융소비자 총괄기관과 그 외 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 총괄기관과 그 외 기관 간의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 포함) 바.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해당사항 없음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감독규정 별표 2. 4. 4.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표 Ⅲ-2〉 계속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9조 제1항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규정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포함)	해당사항 없음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감독규정 별표 2.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해당사항 없음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	감독규정 별표 2. 2. 라.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감독규정 별표 2.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담당 임원·직원과 금융소비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성과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에 관한 사항
1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 제4항 제4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해당사항 없음
12.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감독규정 별표 2. 5.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 계약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감독규정 별표 2. 8.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주: 1)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별표 2. 비고 2. 제3호 다목에 따른 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나. 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다. 「은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라.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1)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2)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른 자산이 전체 자산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마. 그 밖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전담하는 사람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기준의 필수포함사항을 추가하여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새로 규정된 부분이나 중첩되더라도 세부 내용이 추가·강화되는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 대한 사항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 2. 5.의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 및 8.의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규정된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및 제10호의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응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기준 필수포함사항에는 세부 내용이 추가·강화되어 있다.

다. 보험업법상 업무지침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기준

보험업법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지침 필수포함사항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기준의 필수포함사항은 상당 부분에서 중첩되지만 후자에는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새로 규정하거나 보다 상세한 규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두 기준의 필수포함사항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Ⅲ-3〉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기준 필수포함사항 비교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제1호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규정
가.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감독규정 별표 2.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감독규정 별표 2.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가.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 다.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라.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표 Ⅲ-3〉 계속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제1호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규정
	마.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바.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금융상품등에 관한 업무 위탁 및 관련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다.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u>감독규정 별표 2. 3.</u> 3.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대표이사, 이사 등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의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라.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관한 금융소비자 총괄기관과 그 외 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 총괄기관과 그 외 기관 간의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 포함) 마.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라.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해당사항 없음
마.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처리	<u>감독규정 별표 2. 4.</u> 4.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바.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해당사항 없음
사. 업무지침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u>감독규정 별표 2. 7.</u>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아.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및 업무상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표 Ⅲ-3〉 계속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제1호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규정
자.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	감독규정 별표 2. 2. 라.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감독규정 별표 2.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담당 임원·직원과 금융소비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성과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에 관한 사항
차.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감독규정 별표 2. 2. 나.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
카.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세목의 사항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다. 보험대리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준법감시인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해당사항 없음
타.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자율협약에 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파.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3.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다음의 사항 가. 제휴보험회사의 선정·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판매대상 보험상품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다.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제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민원 및 분쟁 처리절차와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 라. 보험회사와의 제휴계약이 종료될 경우 고객보호에 관한 사항 마. 보험상품판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표 Ⅲ-3〉 계속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제1호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규정
거. 소속 보험설계사 위촉·관리에 관한 다음 각 세목의 사항 가. 보험설계사 위촉기준 나. 보험업법 제85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업무 수행 제한 등 불이익 부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감독규정 별표 2. 5.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 계약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감독규정 별표 2. 8.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들은 보험업법상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기준의 필수포함사항을 추가하여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새로 규정된 부분이나 중첩되더라도 세부 내용이 추가·강화되는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 대한 사항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 2. 5.의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 및 8.의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규정된 것이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1. 나.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및 1. 자.의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응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기준 필수포함사항에는 세부 내용이 추가·강화되어 있다.

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과 특정금융정보법상 업무지침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필수포함사항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 내용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과 중첩된다.

이는 2018년 4월 1일 감독규정 개정 시에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기준과 특정금융정보법의 준수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자금세탁방지에 필요한 주요 내부통제사항에 관해 금융회사 이사회, 최고경영자 등의 역할과 관리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에서 규정된 것이다.[104] 특정금융정보법상 업무지침과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은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소관사항이며,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에는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높게 요구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법령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Ⅲ-4〉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과 특정금융정보법상 업무지침 비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6호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제3항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의 마련 및 운영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영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항 가. 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등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8-4호로 2018년 2월 27일 일부 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2018년 4월 1월 시행) 제·개정 이유를 참조 바람

〈표 Ⅲ-4〉 계속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6호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제3항
–	나. 법 제5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른 고객 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다.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라.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마. 금융회사등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 및 교육·연수	해당사항 없음

보험회사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에 특정금융정보법상 업무지침의 필수포함사항을 추가하여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 내부통제 업무 총괄담당자

가. 개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게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과 각종 거래상 위험의 점검·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각 내부통제 전담조직 내지 위험관리 전담조직으로 하여금 이들의 직무수행을 지원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경영진으로부

터 독립하여 내부통제 업무에 전념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개발·판매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및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에게 부여된다.

특정금융정보법은 보고책임자를 임명하여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각 개인정보 내지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내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등의 업무를 부여한다.

끝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법령별로 규율사항에 관해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담당자를 지정 내지 선임하게 하는 것은 같지만, 그 지위와 자격요건, 겸직 제한, 지원조직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서로 다른바,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Ⅲ-5〉 법령별 내부통제 업무 총괄담당자 관련 규제 비교

구분	내부통제 총괄	지위	자격요건	겸직금지	지원조직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준법감시인	원칙: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예외: 소규모 회사[1)2)]직원 선임 가능	소극적 요건 有 적극적 요건 有	자산운용 업무 본질적 업무·부수업무·겸영업무 위험관리 업무(소규모 회사[3)] 제외)	내부통제 전담조직 예외 有: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 금융회사
	위험관리 책임자	원칙: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예외: 소규모 회사[4)] 직원 선임 가능	소극적 요건 有 적극적 요건 有	자산운용 업무 본질적 업무·부수업무·겸영업무 준법감시업무(소규모 회사[5)] 제외)	내부통제 전담조직 예외 有: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 금융회사
보험업법	준법감시인	-	소극적 요건 有 적극적 요건 有	모집 등 영업활동 관련 업무	대규모 법인보험대리점[6)]: 내부통제 지원조직

〈표 Ⅲ-5〉 계속

구분	내부통제 총괄	지위	자격요건	겸직금지	지원조직
금융 소비자 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임원	이사, 감사, 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	원칙: 금융소비자 보호 외 다른 업무 예외 有: 소규모 회사[7]는 준법감시인 겸직 가능	금융소비자 총괄 기관(대표자 직속)
특정 금융 정보법	보고책임자	-	-	-	
개인 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사업주·대표자, 임원, 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소상공인: 사업주·대표자)	-	-	분야별 개인정보 취급자
신용 정보법	신용정보 관리· 보호인	원칙: 사내이사, 집행임원, 사실상의 이사 또는 신용정보 제공·활용·보호·관리 총괄직원 예외 有: 대규모회사[8] 임원 선임	-	-	-
전자 금융 거래법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대규모회사[9] 임원 선임	적극적 요건 有	대규모회사[10]: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 부문 업무	정보보호인력(정보기술부문 인력과 직무 분리)

주: 1) 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미만(상장법인 2조 원 미만)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임
2) '소규모 회사'의 구체적 기준은 법령별로 다르나 편의상 표 내부에서는 '소규모 회사'로 표기하고 각주에서 부연함
3) 최근 사업 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주권상장법인은 2조 원 미만)인 보험회사 또는 외국보험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 원 미만인 국내지점임
4) 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미만(상장법인 2조 원 미만)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임
5) 최근 사업 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주권상장법인은 2조 원 미만)인 보험회사 또는 외국보험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 원 미만인 국내지점임
6) 직전 분기 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임
7) 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인 보험회사 및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500명 미만인 법인 보험대리점 등임
8) 직전 사업 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 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보험회사를 말함
9) 직전 사업 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 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보험회사를 말함
10) 직전 사업 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 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보험회사를 말함

나. 겸직 내지 통합운영 허용 범위

내부통제 업무 총괄 내지 지원조직과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겸직 내지 통합운영 허용 범위이다.

내부통제 업무 총괄담당자는 이해상충 방지 및 직무충실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부 법령에서는 명시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러나 〈표 Ⅲ-5〉에서 각 법령별로 요구되는 총괄담당자를 모두 별도로 선임한다면 보험회사에는 내부통제 관련 총괄담당자만 7명이 필요하다. 법령에서는 내부통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임원일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더라도 최소한 회사 내부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권한과 지위가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 쉽지 않다. 임원의 추가 선임으로 인한 비용부담 외에도 유사한 기능에 대해 여러 임원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내부통제 업무 수행에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명시된 겸직제한 규정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겸직이 가능한지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보면 자산운용 업무,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부수업무, 겸영업무 및 위험관리 업무의 겸직이 금지된다. 반대해석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총무·인사·회계·법무·소비자보호 등 후선업무(Back office 업무)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업무는 겸직이 가능하다.

일견 다른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 관련 업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금지하는 자산운용 업무,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부수업무, 겸영업무 및 위험관리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인 보험회사 및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500명 미만 경우에 한함)이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명시적으로 준법감시인과의 겸직이 가능하다고 규정[105]하고 있다. 다만,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의 경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임원일 것이 요구되므로, 겸직하려는 준법감시인은 임원이어야 한다.[106]

105)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7조 제5항 본문

106)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7조 제5항 단서

그 밖에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준법감시인의 겸직이 가능하다. 금융감독당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역시 원칙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107]

(ii)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겸직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인 보험회사 및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500명 미만인 법인 보험대리점 등의 경우는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을 겸직하지만, 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원을 선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준법감시인을 겸직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다른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내부통제 업무 총괄담당자는 어떨까?

금융감독당국은 이 경우 해당 임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없고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는 예시적 사항이므로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108]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책임자 등 소비자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는 겸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109]되는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역할도 겸할 수 없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생각건대,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업무 총괄담당자가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직무충실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회사 규모가 크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부담도 클 것인바,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담 임원을 두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 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전담' 임원 선임 의무가 직접적 위임 근거 없이 감독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 포함사항 일부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법 체계상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 금융회사에 추가 임원 선임을 초래할 수

107)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제190211호)

10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1. 4. 26),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3차)", p. 7

109)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동감독규정 별표 2. 2. 바.

있는 전담 임원 선임 의무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소비자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함께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담당가능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ii)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은 총괄담당자의 겸직을 금지하지 아니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은 총자산이 10조 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의 겸직을 금할 뿐이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겸하는 것이 가능하다.[110]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도 금지되지 않으므로 1인이 세 가지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지만,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전문 지식과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iv) 실제로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하려는 자가 모든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지위 및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 경우 각 법령상 요구되는 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신용정보보호법은 직전 사업 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 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보험회사에 대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선임할 것을 요하는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경우 임원으로 선임할 의무가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으로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할 의무가 없더라도 신용정보법상으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할 의무가 있는 경우, 두 직을 겸하기 위해서는 임원이어야 한다.

다. 준법감시인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업무 범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법 제24조 제1항)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소비자

11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자치부(2016), p. 54

보호 내부통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전담조직의 업무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업무도 포함된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보호상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과 총괄기관에 대해 별도 규정함에 따라 둘 사이의 업무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ⅰ) 준법감시인 및 전담조직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업무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및 총괄기관의 내부통제 업무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준법감시인에게 거시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견해와 (ⅱ) 양자 간의 업무를 분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업무의 구분에 반대하는 견해에서는 금융상품의 판매라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제외하고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논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111)]

반면, 업무 분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과 총괄기관에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한 취지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기준에서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관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그 외 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정한 것에 비추어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업무에 대해 준법감시인이 2차로 점검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112)]

생각건대, 전자의 경우로 보면 준법감시인 및 전담조직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및 총괄기관이 중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력의 낭비는 물론 내부통제 업무 수행상 판단불일치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준법감시인이 이를 감독하는 관계로 보면 비효율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경우에는 법규상 대등한 지위로 설정된 둘 간의 관계가 지휘·감독 관계가 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업무 관점에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금융소비자보호업무에 관해 내부통제 미흡 발생 시 책임 관계도 모호해질 수 있다.

후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되고 준법감시인의 업무

111) 신광원(2021), pp. 162~163

112) 노태석(2022), p. 7

부담 및 책임 문제도 경감될 것으로 보이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와 그 밖의 내부통제 업무 사이에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는 경우에 업무와 책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및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적인 위임규정 없이 감독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준법감시인의 업무와 책임을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에게 이전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양자 간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 내부통제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정보보호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은 내부통제 관련 사항의 운영을 위해 총괄담당자의 선임 내지 지정의무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내부통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정보보호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이사회에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하여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113] 그러나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은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내부통제위원회에,[114] 위험관리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은 이사회 내 위원회인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115]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보험업법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관해서는 준법감시인이 이끄는 내부통제위원회에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책임을 부여[116]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회사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관해서 대표자가 이끄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부여[117]한다.

113) 임정하(2016), p. 154
114)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115)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1조
116)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7. 가.
117)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별표 2. 3. 가.

전자금융거래법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이끄는 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중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한다.[118)]

법령별로 내부통제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 구성원 및 역할은 모두 조금씩 다르며 간략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Ⅲ-6〉 내부통제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정보보호위원회 비교

구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기구명	내부통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대표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구성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그 외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임원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되는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	-	대표자,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 및 사내 임원	정보보호업무 관련 부서장, 전산운영 및 개발 관련 부서장, 준법업무 관련 부서의 장 등
역할	1.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2.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3.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4.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1.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보험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개정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다음 사항의 조정·의결 1. 경영방향 2. 주요 관련 제도 변경 사항 3. 금융상품의 개발,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 공시 관련 사항 4. 임·직원의 성과보상 체계에 대한 평가 5.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준수실태 점검·조치 결과 6.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 감독 및 검사 결과 후속조치 관련 사항 7. 중요 민원분쟁 대응 결과	다음 사항의 심의·의결 1.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관련 사항 2.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 3.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 관련 사항 4. 전산보안사고 및 전산보안 관련 규정 위반자 처리 관련 사항 5. 기타 필요사항

118)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도록 한 것은 최고경영자에게 내부통제 관련 최종책임을 부여하여 주도적으로 내부통제 주체 간 협력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위험관리위원회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되는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데, 금융회사 위험관리가 회사의 재무건전성은 물론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위험관리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이사회에 맡긴 것으로 이해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표자가 이끄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비해 보다 적극적 역할 수행을 내포하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처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취지는 대표자 및 주요 임원이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조직에 체화시키는 데 있다.[119]

한편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와 달리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 내지 대표이사가 아니라 준법감시인이 이끄는 내부통제위원회에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맡기고 있어 보험회사에 비해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중요 정보보호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이끄는 정보보호위원회에 맡기고 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내부통제 대상인 정보보안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이끌고 관련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정보보호위원회에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사료된다. 최고경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지만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내지 보험업법상 내부통제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간에는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두도록 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에 설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120]

---

11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1. 2. 18),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1차)”, p. 5
12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1. 2. 18),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1차)”, p. 5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본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규율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고, 구성원도 대부분 중복된다. 두 법률상의 내부통제위원회를 별도 운영할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별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번거로움이 크다할 것이므로 타당한 해석이라 본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적용되는 보험업법상 내부통제위원회는 준법감시인이 위원장이 되는 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으로는 대표자가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같은 해석이 적용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생각건대, 보다 강한 규제에 맞춰 대표자가 위원장이 되어 양 법률상 규정된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양 법률의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법령해석이나 입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5. 위반 시 제재

내부통제 관련 의무 위반 시 제재는 크게 과태료와 기관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로 구분된다.

가. 과태료

법령별 내부통제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Ⅲ-7〉 내부통제 관련 의무위반 시 과태료 비교

구분	부과 요건	금액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 미마련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준법감시인 지위(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위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시 의결절차 미준수 준법감시인을 직원 중에 선임하는 경우로서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선임	1억 원 이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미운영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금지 위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임면사실 미보고·거짓보고	3천만 원 이하

〈표 Ⅲ-7〉 계속

구분	부과 요건	금액
보험업법	-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1억 원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보고책임자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 수립,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 교육 및 연수 조치 미이행	1억 원 이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지정	1천만 원 이하
신용정보법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 실태 미제출	5천만 원 이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내지 선임요건 위반	3천만 원 이하
전자금융거래법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미지정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위(임원) 위반	2천만 원

법령별로 부과요건과 금액은 상이하나, 부과 요건은 크게 (ⅰ) 넓은 의미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ⅱ) 내부통제 관련 업무 총괄담당자 미선임·미지정 내지 선임요건 위반, (ⅲ) 기타 내부통제 관련 의무 위반으로 나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내부통제기준 등 마련의무, 준법감시인 등의 임면 및 자격요건,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회사의 의무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 부과 요건도 가장 다양하다.

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대해 별도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제외하고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임면이나 겸직 제한 등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법률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법 체계적인 이유와 더불어, 위반에 대한 제재보다 금융회사 내에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유연한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특정금융정보법과 정보보호 관련 법률들은 법률에 규정된 주된 의무를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요건을 두고 있다. 예컨대,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을 주된 의무로 하고 내부통제체제의 구축과 운영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요건 역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미지정 및 선임요건 위반으로 구성된다.

나.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외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를 두고 있는 법률들은 법 위반에 대해 기관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각 법률에서 제재조치 대상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그 밖에 특정금융정보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은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 위반사항을 적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규정한다.

〈표 Ⅲ-8〉 내부통제 관련 의무위반 시 기관 및 임직원 제재조치 사유 비교

구분	제재조치 사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 관련 의무 미이행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보수지급과 평가 기준 관련 의무 미이행 자격요건 미충족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금지 위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임면사실 미보고·허위보고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자료·정보 미제공·허위제공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보험업법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표 Ⅲ-8〉 계속

구분	제재조치 사유
특정금융정보법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정보법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 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6. 소결

본 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령에 규정된 내부통제 규제 간의 주된 차이점을 개관하고 주요 항목에 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내부통제 관련 규제가 여러 법령에 산재하고 법령별로 규율사항이 다름은 물론 내부통제 관련 의무를 구성하는 방식과 체계 역시 상이하다. 이는 법령별로 수범자의 범위가 다르고, 해당 범위의 수범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내부통제의 수준과 수범자의 규제 부담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보면 하나의 내부통제체제 안에 어떻게 위치시켜야 할지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법령별로 넓은 의미의 내부통제기준에 담아야 할 사항이나, 수행하여야 할 내부통제 관련 업무는 병렬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 항목에 유의한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체제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규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등 가장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특정금융정보법의 일부 내용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필수포함사항으로 규정한 것과 같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 중 내부통제 필요성이 큰 부분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에 규정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총괄담당자의 지정 내지 선임 등 운영조직에 관해서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법령별로 규율사항에 대해 총괄담당자를 지정 내지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들의 지위나 자격요건을 서로 다르게 규정한다. 대부분의 법령에서 회사 규모에 맞게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총괄담당자의 지위(임원 여부 등) 등에 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만 의무를 두고 있지만, 그 기준도 법령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회사별로 일일이 따져보아야 한다.

규율사항이 다르더라도 내부통제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이해상충 우려로 인해 겸직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 경우는 법률로 설치의무가 규정된 총괄담당자의 직무충실성을 해치지 않는 겸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준법감시인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간의 경우처럼 총괄담당자 간의 업무범위상 불확실성도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령해석이나 입법을 통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넓게는 최소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제 운영조직 및 운영방식에 관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